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10 . .

발 의 자: 김영태

찬 성 자: 김민성·김영길·김원섭·김정도
박세채·안주찬·이명희·이상호
이정희 의원(9인)

1. 제안이유

구미시에 거주하는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2)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나. 부서검토: 체육진흥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유·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활동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 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 12. (생략)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체육진흥과

조 례 명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 제16조, 제18조

□ 주요 사항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안 제5조)
 -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안 제7조)
 - 우수성적 거양자(도 및 전국단위 이상 대회) 포상금 및 장려금 지원
- 위탁 운영(안 제6조), 지도·감독(안 제8조)

□ 검토 결과

-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유·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구미 체육 발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성장 유도
 - 유·청소년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활성화로 구미 체육 꿈나무 육성 기대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문 제 점 :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 대한 포상, 격려금 지급을 위한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에 비용이 수반되나 비용이 의안의 내용상 선언적·권고적이어서 비용추계가 어려움
 - ※ 향후, 지급기준의 설정 수준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
 - ※ 예산 범위 내 지급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김윤미(☎054-480-4902)